

## 지역사회의학 임상실습 운영 협약서

서울시 성동구 보건소(이하 “성동구 보건소”)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/의학전문대학원(이하 “한양 의대”)은 지역사회의학 임상실습 운영과 상호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“성동구 보건소”와 “한양 의대”가 관·학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 참여함으로써 상호간의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고 「지역사회의학 임상실습」 수업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학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약유효기간)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.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기관은 협약만료 1개월 전에 상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, 해지하지 않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3조(협약사항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지원·협력한다.

1.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의료정보 교환
2.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의학보건의료사업 제반구축
3. 의학건강증진사업계획의 중점과제 선정 및 제안
4. 실습학생들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
5.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항
6. 교육특구관련 업무 지원 등

제4조(협약사항의 추가 및 변경) 협약기간 중이라도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해 협약사항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(비밀보장) 양 기관은 지역사회의학 대상자와 실습학생에 대한 일체의 정보 및 협의 사항과 실습 중 취득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6조(협약이행에 따른 세부사항) 본 협약의 이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“성동구 보건소”와 “한양 의대”가 상호협의 하에 시행한다.

제7조(협약의 취소)

1. 협약기간 중 협약사항 및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중이라도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.
2. 협약기간 중 상대 기관에 대해 명예훼손 등 불이익이 초래한 경우 한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내용의 공유) 본 협약은 “성동구 보건소”와 “한양 의대”에 공동 적용된다. 단, 각 기관의 운영특성에 따라 적용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협의를 하여 적용한다.

제9조(해석)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례에 따른다.

제10조(기타) 「지역사회의학 임상실습」과 관련하여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나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“한양 의대”에서 책임을 지며, 양 기관은 상호간 신의와 성실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위의 내용과 같이 협력기관으로 상호협력하며,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양 기관의 장이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. 3. 4.

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23길 10     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

서울시 성동구 보건소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/의학전문대학원

소 장 김 경 희      (인)

학(원)장 노 영 석      (인)

## 지역사회의학 임상실습 운영 협약서

한양대학교 의과대학/의학전문대학원(이하 “한양 의대”)과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(이하 “성동구 보건소”)는 지역사회의학 임상실습 운영과 상호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“한양 의대”와 “성동구 보건소”가 관·학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 참여함으로써 상호간의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고 「지역사회의학 임상실습」 수업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학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약유효기간)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.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기관은 협약만료 1개월 전에 상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, 해지하지 않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3조(협약사항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지원·협력한다.

1.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의료정보 교환
2.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의학보건의료사업 제반구축
3. 의학건강증진사업계획의 중점과제 선정 및 제안
4. 실습학생들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
5.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항
6. 교육특구관련 업무 지원 등

제4조(협약사항의 추가 및 변경) 협약기간 중이라도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해 협약사항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(비밀보장) 양 기관은 지역사회의학 대상자와 실습학생에 대한 일체의 정보 및 협의 사항과 실습 중 취득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6조(협약이행에 따른 세부사항) 본 협약의 이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“한양 의대”와 “성동구 보건소”가 상호협의 하에 시행한다.

제7조(협약의 취소)

1. 협약기간 중 협약사항 및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중이라도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.
2. 협약기간 중 상대 기관에 대해 명예훼손 등 불이익이 초래한 경우 한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내용의 공유) 본 협약은 “한양 의대”와 “성동구 보건소”에 공동 적용된다. 단, 각 기관의 운영특성에 따라 적용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협의 하여 적용한다.

제9조(해석)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례에 따른다.

제10조(기타) 「지역사회의학 임상실습」과 관련하여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나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“한양 의대”에서 책임을 지며, 양 기관은 상호간 신의와 성실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위의 내용과 같이 협력기관으로 상호협력하며,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양 기관의 장이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. 3. 4

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

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23길 10

한양대학교 의과대학/의학전문대학원

서울시 성동구 보건소

학(원)장 노영석 (인)

소장 김경희 (인)